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 보관 시 관리 기준 준수
의무 부과 등〉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9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축분뇨 또는 퇴비 보관 시 관리 기준 준수 의무 부과 등	3

I. 제안경위

2026년 3월 16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축분뇨 또는 퇴비 보관 시 관리 기준 준수 의무 부과 등

개정안은 ①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②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 ~ 18. (생 략)</u> ④ (생 략)	-----. <u>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u> <u>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분</u> <u>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아니한</u> <u>자</u> <u>2. ~ 19. (현행 제1호부터 제18</u> <u>호까지와 같음)</u>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하는 자 등과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으로 인해, 해당 퇴비 등이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살포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액비와 달리 퇴비에 대해서는 살포 및 살포 전 보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가축분뇨법상 퇴비와 액비의 비교]

구 분	퇴비	액비
정의	(법 제2조제5호)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	(법 제2조제6호)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적합기준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3)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3)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이하 생략)

관리기준	(법 제10조제1항)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살포기준	없음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5) 살포기준 규정
살포지 확보	없음	(법 제12조의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액비·시설 설치하는 자는 살포지 확보 의무 *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면적기준 제시
위반 시 규정	(법 제10조제2항)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금지행위	(시행규칙 제12조의4)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②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관되고 있는 가축분뇨 및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 퇴비를 수집,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5]에는 액비의 살포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퇴비를 방치물이 아니라 곧 사용할 비료로 주장하는 경우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치명령으로 이행을 확보하려 하여도 해당 조문은 조치명령 미이행 시에 벌칙이 적용되는 단계적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단속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과 이의 준수 의무 부과 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야적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농업 관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향후 개정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는 구체적인 상황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법 시행 후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이 야적퇴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후처리비용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고,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해서도 오염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비례적 제재를 통해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출함⁴⁾⁵⁾⁶⁾.

4) 그 밖에 **경상북도 안동시**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농민 연령층이 고령화되었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정책과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시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반,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또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는 가축분뇨 퇴비의 방치 및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심각함에도 현행법상 조치명령 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악취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

문 의 처

02)6788-5541

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제재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6) 해당 의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안동시의 의견은 타당하나, 가축분뇨의 퇴비화 관련 농가 지원은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고, 1년간의 유예기간(부칙 시행일 규정)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와 농가 계도를 충분히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